# 『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』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제7조 (카드이용 정지, 해지) ① ~ ⑤ (생 략)	제7조 (카드이용 정지, 해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
⑥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	⑥ <u>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</u> 이용일(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)로부터 1년 이상이용실적이 없는 카드(이하 '휴면카드'라함)로 된 경우,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, 전화,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8항에 따라계약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- 여전법 감독규정 (제24조의11) 일부개정안 반영
	1.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(하이패스 카드),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⑦ 제6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, 전화,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. ⑧ 카드사는 제6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.	
제16조 (포인트 및 기타서비스) ① ~ ② (생 략)	제16조 (포인트 및 기타서비스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
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 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 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)	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 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 다.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)	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에
1.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·도산·경영위기, 천재지변, 금융환경의 급변, 또는 그 밖에 이에 준		

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<신 설>

2. ~ 3. (생략)

- ④ (생략)
-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 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 이지,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자우편(E-MAIL)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 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 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자우 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 다.
- 1. 제3항 제1호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
- 2. 제3항 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 월 이전
- ⑥ ~ ⑦ (생 략)

1의2.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 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·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

- 2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 금소법 시행령 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 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 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 편(E-MIL),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 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 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

제15조 및 감독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가 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

- 1. 제3항 제1호, <mark>제1호의</mark>2, 제2호 : 사유 발생 즉시
- 2. 제3항 제3호 :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 월 이전
- 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#### <신 설>

# 제16조의 1(카드 이용내역 표시)

- ①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 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 하여 드립니다. 단, 결제대행업체의 전산 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,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 니다.
- 권익위·금융위의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 제안사항('21.3월) 반영

## <신 설>

### 제28조 (경과조치)

- ① 제16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 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.
- 포인트 반올림 및 절상 적용일자 표기

	②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의 '전자문서'추가는 2021년 11일 10일부터 적용합니다.③ 제16조의1 제1항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.	- 휴면신용카드 관련 고지수단 변경사항 의 적용일자 표기 - 카드 결제내역 표시개선 적용일자 표기
제28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	제 <mark>29</mark> 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)	- 조 번호 내림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제29조 (관할법원)	제 <u>30</u> 조 (관할법원)	- 조 번호 내림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<b>제30조 (유보사항)</b> (생 략)	제 <u>31</u> 조 (유보사항) (현행과 같음)	- 조 번호 내림